

수 신: 대구광역시의회의장

제 목: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위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 및 「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: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2024년 8월 16일

대표 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이성오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권기훈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김지만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손한국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윤권근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이동욱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이재숙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임인환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조경구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#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0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8. 16.

발의의원 : 이성오, 권기훈,  
김지만, 손한국,  
윤권근, 이동욱,  
이재숙, 임인환,  
조경구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 이유

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,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,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의무화(안 제4조)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 보장(안 제7조)

다.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(안 제12조)

라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인용 법령 변경 등에 따른  
조문 정비

### 3. 참고 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 「지방재정법」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등지방자치단체”를 “등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예산과정”을 “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”으로, “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”을 “주민참여를 보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따라 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하고”를 “하고,”로 한다.

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- 3.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각각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을

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, “회의의”를 “회의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”를 “회의개최”로, “위원에게 보내”를 “심의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보내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각각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지원협의회”를 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참여예산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지 원 등”을 “지원 등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시 공무원교육원의 「외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」”을 “「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 규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.)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·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법령준수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예산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법령준수의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등 지방자치단체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----- ----- ----- 주</p>

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주민의 권리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민참여를 보장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주민의 권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라야 -----  
-----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하고,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생략)

제12조(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4. (생략)

5. 기타 국고보조사업,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.

제13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4조(회의록 공개) ①·② (생략)

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)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한다.

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6. 그 밖의 -----  
--.

제13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---  
-----  
-- 인정할 때에는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인정할 때에는 ----  
-----  
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회의록 공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

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·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지원협의회

제19조(지역회의)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·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를 둘

한 법률」 제9조제1항-----

----- 회의 -----

제15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
회의개최 -----

----- 심의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보내, -----

② -----

----- 인정할 때에는 -----

③ ----- 인정할 때에는 -----

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

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

제19조(지역회의) ① -----

수 있다. 다만, 각 구·군의 주민 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.

② 지역회의는 각 구·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4장 지원 등

제21조(예산교육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공무원교육원의 「외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」을 준용한다.

⑤ (생략)

-----.  
-----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위원회-----  
-----.

제4장 지원 등

제21조(예산교육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「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 규정」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[제목개정 2018. 3. 27.]